대외경제전문가풀 WTO 분과회의 토의자료

DDA 농업 협상 최근 동향

일 시 : 2007.8.24(금) 16:00

장 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 표 : 농림부 농업협상과 이충원

목 차

1. 협상 동향 ………………………………………………… 19

2. 세부원칙 초안 주요내용 ……………………………… 20

3. 향후 대응계획 ……………………………………………… 22

< 붙임 >

1. 세부원칙 초안 분야별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 23

2. 그간 의장제안서 주요내용 비교 ……………………………………… 57

3. 특별품목 선정지표 ……………………………………………………… 58

4. DDA 협상 경과 ………………………………………………………… 59

5. UR · DDA 협상 추진경과 ……………………………………………… 60

6.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 61

7.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분포 …………………………………………… 62

1 협상 동향

❑ WTO 주요국은 '**07.1월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한 후 주요 **4개국간**(미국, EU, 인도, 브라질) **고위급회의** 및 G10, G33 등 그룹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

○ **주요 4개국**은 6.19일부터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6.21일)

○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원인**은 농업분야보다는 **비농산물분야(NAMA)의 관세감축**이었던 것으로 관측

❑ DDA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은 **7.17일 세부원칙 초안**을 전회원국에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참여**를 촉구

○ **세부원칙 초안**은 그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타결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최대한 좁혀서 제시

○ **미국, EU** 등은 세부원칙 초안을 **유용한 진전(useful step)**으로 평가

❑ **WTO 사무총장 및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향후 제네바에서 **다자차원의 프로세스**를 통해 협상을 적극 진전시킨다는 계획

○ 의장은 7.17일 제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7.23일주간 각국 입장을 청취한뒤, **9월중 집중적인 다자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전망

○ **농업분야**는 주요 4개국간 **입장차이를 좁힌 상황**이므로 비농산물분야 합의시 **연내 DDA협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다만,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2 세부원칙 초안 주요내용

1) 시장접근

❑ 관세감축

○ 선진국의 구간경계는 **20/50/75**이며, 최상위구간감축율은 66-73%

관 세 구 간		감 축 율
1	75% 초과	66-73
2	50%초과 ~ 75%이하	62-65
3	20%초과 ~ 50%이하	55-60
4	20%이하	48-52

○ 개도국은 구간경계는 **30/80/130**, 감축율은 선진국의 **2/3** 적용

- 다만 개도국의 경우 평균 관세감축율이 36% 또는 40%이하가 되도록 하는 바, 그 이상이 될 경우 감축율 조정 가능

❑ 관세상한

○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 비중이 5%이상인 경우 TRQ 추가 증량

❑ 민감품목

○ **민감품목수는** 선진국의 경우는 **전체 세번**(무세제외)의 **4 or 6%,**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 개수의 1/3만큼 추가 인정

○ **대우관련**, 일반관세감축폭으로부터의 이탈(deviation)은 1/3-2/3, TRQ증량은 이탈폭과 연계하며 소비량대비 3-6%(개도국은 2/3)

❑ 특별품목

○ **특별품목 선정**과 관련, 특정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세부지표(indicator) list관련 쟁점사항, 국가별 신축성 부여방안 등 향후 논의방향만을 제시

○ 특별품목 대우는 최소 10%-20% 관세감축(관세감축면제 불가)

2) 국내보조

❏ 무역왜곡보조총액 및 감축대상보조

구 간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대상보조
1구간(EU)	〔75〕〔85〕%	〔70〕%
2구간(미국, 일본)	〔66〕〔73〕%	〔60〕%
3구간(기타)	〔50〕〔60〕%	〔45〕%

* 무역왜곡보조총액 구간경계 : 100/100～600/600억불 이상

* 감축대상보조 구간경계 : 150/150～400/400억불 이상

❏ 품목특정 감축대상보조 상한

○ **UR이행기간('95～'00년) 동안 지원된 평균**으로 하되 국별 이행계획서에 명기하고, 이행기간동안 균등하게 유지

- 미국의 품목특정 AMS 상한은 UR이행기간('95～'00년) 동안 지원된 총 AMS에 〔'95 ～'04년〕의 품목특정 지원비율을 적용

❏ **최소허용보조** : 최소 〔50〕〔60〕%를 감축하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률에 따른 감축비율과 비교하여 더 큰 감축치를 적용

❏ **블루박스** : **상한**은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미만(선진국)**

3) 수출경쟁

❏ **수출보조** :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철폐하기 위해 2010년까지 50%를 철폐하고, 2013년까지 나머지 50% 철폐

❏ **식량원조** : 모든 식량원조는 〔수요중심, 무상원조, 상업적 수출과 관련금지, 공여국의 시장개척금지, 상업적 목적의 재수출금지〕 충족해야 함

3 향후 대응계획

❑ DDA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협상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DDA협상 대응 T/F 운영중, 단장 차관)

○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쟁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

○ **국내보조분야**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감축대상보조 한도 최소화 노력

- 다만, 수매, 가격지지 등 시장왜곡적인 정부지원은 허용보조 요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편 필요

❑ 협상타결에 대응하여 G10, G33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 양자협의** 추진

○ 농산물 수입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여타 주요국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DDA 협상 전개의 핵심변수인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농업법 개정 동향을 예의 주시

○ 우리 이해관계 반영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전개

❑ DDA 협상동향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 주요 단계별 국회보고, 언론보도, 설명회 등 수시 개최

〔 붙임1 〕

세부원칙 초안 분야별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1. 시장접근

가. 관세감축

<주요내용>

❏ 선진국의 구간경계는 **20/50/75**이며, 최상위감축율은 **66-73%**

○ 개도국은 구간경계는 **30/80/130**, 감축율은 선진국의 **2/3**

선진국			개도국		
관세 구간(%)	감축률(%)		관세 구간(%)	감축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0~20	48	52	0~30	32.0	34.7
20~50	55	60	30~80	36.7	40.0
50~75	62	65	80~130	41.3	43.3
75%초과	66	73	130%초과	44.0	48.6

❏ 다만 개도국의 경우 **평균 관세감축율이 36% or 40%**이하가 되도록 하는 바, 그 이상이 될 경우 구간별 감축율 조정

○ **소규모취약국가(SVE)**는 개도국 구간감축율에서 10%p 하향 조정하고 평균감축율은 24%이하가 되도록 추가 조정 가능

- SVE가 한도양허(Ceiling binding) 또는 저율 관세로 균일하게 양허한 경우는 구간감축방식이 아닌 평균감축방식 적용 가능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구간경계는 **G20**제안(20/50/75, 30/80/130)으로 정해질 전망

ㅇ 또한 기존 의장문서와는 달리 별도의 개도국 구간경계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

❑ 최상위구간 관세감축율에 있어서는 지난 의장문서**(0-85%)**와 비교할 때 다소 낮게 제시**(67-73%)**되어 미국**(90%)**제안은 배제된 반면, **G20**제안**(75%)**과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

ㅇ 이를 통해 볼 때 선진국 최상위구간 감축율은 **7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여전히 수입국들에게 부담이 될 전망

❑ 한편 평균감축율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의장문서와는 달리 개도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둔 점은 긍정적

ㅇ 개도국에 있어 평균 감축율이 36 or 40%이상이 될시 감축율을 조정하도록 한 바, 추가 부담이 아닌 부담 감축효과가 발생

나. 민감품목

<주요내용>

❑ 민감품목 개수관련, 선진국은 전체 **dutiable tariff**(무세 및 미양허 품목 제외)의 **4 or 6%,** 개도국은 선진국의 **1/3**만큼 추가**(5 or 8%)**

ㅇ 다만 최상위구간에 세번의 **30%**이상이 집중된 국가 및 **6**단위 사용으로 불비례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는 **6 or 8%**까지 인정

❑ 일반 관세감축폭에서의 **이탈폭(deviation)은 선진국의** 경우 **1/3-2/3,** 개도국의 경우는 **2/3**이상 허용

❑ **TRQ**증량은 deviation과 연계하여 **소비량대비 3-6%**

○ **2/3 deviation** 적용시에는 **소비량의 4%** 또는 **6%, 1/3 deviation** 적용시에는 **소비량의 3%** 또는 **5%**

○ 개도국의 경우는 **선진국의 2/3**만큼 증량하되, 국내 소비량 산출시 생산농가의 자가소비량은 제외함

< 선진국 민감품목의 신규 TRQ 확대>

조 건	**TRQ증량(소비량대비 %)**	
	최소	최대
Deviation 1/3 적용시(최소 격차)	3	5
Deviation 2/3 적용시(최대 격차)	4	6
민감 품목 수를 증대 적용시	평균 4.5	평균 6.5
감축 후 관세율이 100% 이상인 세번수가 5%초과	+ X%	+ X%
상위 2개 구간에서 쿼터밖 수입량이 쿼터내 수입량의 50% 이상인 경우 (→1/4 조정 허용) * 단, TRQ가 국내소비량의 2%이상, deviation 1/3적용시	2.25	3.75
하위 2개 구간에서 쿼터밖 수입량이 쿼터내 수입량의 50% 이상인 경우 (→1/5 조정 허용) * 단, TRQ가 국내소비량의 2%이상, deviation 1/3적용시	2.4	4.0
쿼터내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10%를 초과하고 deviation 1/3 적용시	2.5	3.5
쿼터내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20%를 초과	2	3
관세 감축후 수입증가량이 TRQ 증량폭의 2-3배가 될 경우 (→ 1/2만큼 조정 허용)	1.5-2	2.5-3

❑ 다만 TRQ증량에 있어 **수입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

① 쿼터밖 수입량이 쿼터내 수입량의 50%이상인 경우에 있어 (단, 현행 TRQ가 소비량의 2%이상이고, deviation 1/3 적용시만 해당)

- 최상위·차상위구간 해당품목은 1/4만큼 TRQ증량 감축
- 그 외 구간 해당품목은 1/5만큼 TRQ증량 감축

② 쿼터내 수입량이 소비량의 10%이상(deviation 1/3 적용시 해당)인 경우는 2.5 or 3.5%, 20%이상인 경우는 2 or 3%수준만 증량

③ 관세 감축후 수입증가량이 TRQ 증량폭의 2-3배가 될 경우는 1/2만큼 TRQ증량 감축

❑ 이와 함께 **일부 특별사례의 경우에 있어 TRQ 추가증량**

① 세번의 30%이상이 최상위구간에 속하는 국가로 민감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경우는 TRQ증량 평균 4.5-6.5%이상 달성

② 관세감축 적용 후 관세수준이 100%이상인 세번의 수가 전체 세번의 5%를 넘게 되는 국가는 X% 추가 증량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개수 관련**, 기존 의장문서(1-5%)와 비교해 볼 때 **그 범위가 확대된 점 및 개도국 우대(1/3 추가)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

❑ 다만 동 초안에서 제시한 **dutiable tariff**(무세 및 미양허품목 제외)**기준은 민감품목 숫자를 축소하므로 불리**

○ **무세화**는 해당 국가가 시장개방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대 대응

○ **미양허 품목**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경우 쌀(16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민감품목 수가 1개 정도로 큰 차이는 없으나, 향후 관세화시 민감품목(or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민감품목 개수 산정시 포함할 필요

❑ **TRQ 증량구조**는 기존 의장문서와 유사한바,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입비중에 따라 일부 증량폭 감축 조정**

○ 소비량기준은 현재 논의 중인 G10-EU공동제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수입비중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것은 유사

○ 이에 증량 조정방식에서 **보다 많은 조정방안을 제기할 필요** (ex. In-quota 수입이 소비량의 50%이상인 경우는 1 or 2% 증량)

❑ 다만 기존 의장문서(X%)와는 달리 **TRQ증량의 구체수치 (3-6%)**를 제시하고 개도국 우대**(2/3)**를 명시한 점이 차이

○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 **TRQ 증량수준은 선진국 적용시 3-6%, 개도국 적용시 2-4%수준**으로 나타나며, **수입비중이 작은 품목일수록 TRQ증량폭이 크게 됨**

○ TRQ증량폭이 크게 나타나는 품목으로는 **마늘, 감귤, 인삼, 양파, 밤, 감자, 보리, 대우, 천연꿀, 주정, 녹차 등이 있음**

❑ 한편 **고관세비중이 높은 경우**에 있어 **TRQ 추가증량을 규정** 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상한의 대안**으로 해석 가능

○ 우리의 경우 감축후 관세가 **100%이상되는 품목비중**을 살펴보면, **선진국 적용시 4.4-5.5%, 개도국 적용시 7.7%** 정도임

○ 이러한 고관세에 따른 추가 부담에 대해 이중부담 측면에서 반대하되, 도입시를 감안하여 예외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개도국 우대규정 필요성 제기**

❑ **deviation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기존 의장문서내용을 유지하였으나 **개도국의 경우 이를 확대한 측면은 긍정적**

❑ 이와 같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품목범위를 확보하고 주요 품목들의 TRQ 증량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바 G10 및 EU와의 공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

① 민감품목 선정에 있어 dutiable tariff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무세화품목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

② 수입비중에 따라 TRQ증량폭을 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확대할 필요**

③ **고관세비중이 높은 경우에 대한 추가 TRQ 증량은 사실상 관세상한과 연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G10입장파악 및 공조방향**을 모색하고, 도입시에 대비하여 범위 확대 및 개도국 우대조치 필요

- 동 제안은 추후 논의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다. 특별품목

<주요내용>

❑ **세부지표(indicator) 접근법을 중심으로 아래 작업방향 제시**

① 현 G33의 list는 축소정리 필요

② indicator 상에 있어 'significant proportion, relatively low production' 등의 계량화 작업 필요

③ indicator의 투명성, 객관성, 검증가능성 확보 필요

- 국제통계 또는 다른 회원국들도 접근 가능한 국내 통계 활용

❑ **SP 숫자와 관련하여 2가지 옵션 제시**

① 사전에 숫자 정함 없이 indicator에 따라 지정(숫자 부수적 결정)

② 수적 상한(민감품목수 보다는 많음)을 두되, 신규가입국 및 SVE국가 등에게는 추가적 신축성을 부여

❑ 대우는 기 의장문서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으나 달리 합의된 바도 없는 바, **최소 10%-20% 관세감축(감축면제 불가) 입장 유지**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동 초안에서는 기 의장문서와는 달리 **SP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indicator 위주의 G33 제안을 반영함**

ㅇ 다만 SP선정방식에 있어서 indicator 이용방식과 숫자 상한 설정방식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바 향후 논의 본격화 전망

○ 이에 G33내에서는 indicator접근방식 위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통계의 불충분성 등의 문제가 있는 바, **indicator와 숫자를 모두 활용하는 2-track 접근방식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

○ 다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SP의 개수와 대우에 대한 입장이 충돌할 경우 **수보다는 대우에 협상력을 집중**

❑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관세감축 10-20%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민감품목과 비교시 지나친 요구임을 강조할 필요**

○ 동 초안에서 제시된 개도국 최하위구간관세감축율(32-35%)과 민감품목에 대한 개도국 deviation(2/3)을 고려시, **개도국 민감품목 관세감축율은 11-12%가 가능하므로** 특별품목의 관세감축율 10-20%는 지나치게 높은 수치임

○ 이에 G33의 제안처럼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면제를 제안**할 필요

※ 참고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의 이해

❑ 특별품목**(SP)**이란?

○ 특별품목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DDA협상에서 민감품목과는 별도로 **개발도상국에게만 추가 부여하는 특별대우**임

○ 따라서 이는 위의 기준(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에 의거하여 선정토록 하며, 관세감축에 있어 민감품목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여토록 함

* **민감품목**은 각 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선정기준 등 요건없이 일정 수를 지정토록 함

❑ **특별품목(SP)은 어떻게, 얼마나 선정하는가?**

○ SP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각 개도국이 위의 기준에 따른 **지표 (indicator)**에 의거하여 **적절한 수**의 품목을 특별품목으로 스스로 지정 (self-designate)하도록 하는데 합의함(홍콩각료회의)

○ 그러나 이에 있어 지표(indicator)의 구체내용 및 적용방식과 특별품목 숫자 등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아직 협상 중

* 품목범위와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가 있으나, 세부원칙초안에서 의장은 민감품목범위(4-6%)보다는 클 것이라는 수준으로 의견 제시

❑ **특별품목(SP) 지정시 관세감축폭은 어느정도 되는가?**

○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률을 감소 적용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

* 이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특별품목도 관세감축)과 G33 등 개도국(일정품목은 관세감축 면제)간 의견차가 있으나, 의장은 10-20% 정도 감축률 제시

❑ **특별품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특별품목은 **개도국지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문제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특별품목 관심그룹인 G33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 중**

○ **특별품목과 관련한 G33 입장** : ① indicator(현재 12개 제시)를 충족시 이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토록 하며, ② 관세감축방식에 있어서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0%(면제)~10%수준 관세감축률 적용

라. SSG

<주요내용>

❑ SSG에 대해서는 2가지 옵션 제시

① 완전히 폐지(이행기간초 50%감축, 이행말 폐지)

② 민감품목와 동일한 개수만큼 허용하되,

- 물량기준 : (발동기준) 최근 3개년 평균의 25%이상, (구제조치) 1/3
- 가격기준 : 현행 SSG규정의 1/2수준으로 축소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현 논의동향을 볼 때 SSG 품목범위가 대폭 감소되며 발동기준도 강화될 전망

ㅇ 이에 기존대로 G10 및 EU와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되, 내부적으로도 SSG 대상품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마. SSM

<주요내용>

❑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하거나 미세한 수량 및 가격변화가 아닌 **특별한(special)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로 정의

❑ 발동기준에 있어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모두 인정**하되 동시에 발동할 수 없으며 발동횟수 제한

ㅇ 특혜무역(preferential trade)은 발동기준에 산입하지 않음

ㅇ 물량 및 가격기준의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예시

- 물량기준 : 3-5년 평균물량의 110%이상일 경우 발동
- 가격기준 : 12-18개월 평균가격 기준, 구제조치는 수입가격과 기준가격간의 차이만큼 인정

❑ 품목범위에 있어서는 **국내 생산품목 및 그 대체품목**이 원칙

❑ 발동기간은 **당해연도 말 또는 특정품목의 경우는 12**개월 허용

❑ 구제조치(추가 관세)는 **UR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발동기준** 등과 관련하여 기존 의장문서내용을 유지하면서 **일부 구체수치(물량기준관련 발동기준 110% 등)를 제안함**

○ 이는 현 SSG와 비교해 볼 때, 물량기준에 있어서는 single trigger를 적용하였으며, 가격기준에 있어서는 최근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함(SSG의 경우는 '86-'88년 평균가격 기준)

❑ **품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생산품목 및 대체품목에 적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G33내에서도 SSM부과대상을 **모든 농산물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좀더 합리적일 수 있도록 조정 노력**

바. 경사관세

<주요내용>

❑ 지난 의장문서 기본내용을 유지하며 정의의 계량화 등 강조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우리의 경우 경사관세문제가 크지 않으나 캐나다 제안 list에 쇠고기·돼지고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며 대응

사. 관세단순화

<주요내용>

❑ 모든 양허관세는 **종가세(또는 종량세 및 복합세)로 단순화**

- ○ 현재보다 더 복잡한 방식은 안되며 complex matrix tariff는 폐지 또는 최소한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준으로 단순화
- ○ 이 때 전환되는 관세가 기존 관세를 대체한다는 데에 대한 근거자료(supporting data) 제시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현실적으로 과거 AVEs(종가세상당치)로의 전환 논의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종가세로의 단순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 이에 따라 의장초안도 종가세로의 단순화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를 감안시 **우리의 혼합세(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높은 것 적용)를 대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동 초안에서 관세단순화 후 가능한 형태의 종량세에 **우리의 혼합세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포함할 필요**

아. 쿼터내 관세

<주요내용>

❑ In-quota 관세감축율은 **구간별 감축율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평균 감축율 계산시 미산입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쿼터내 관세감축 관련 무세화주장도 있는 바, 이도 구간별 감축방식 등 **타 시장접근분야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간별 감축율 (또는 민감품목 감축율) 적용** 주장 필요

○ 우리의 경우 in-quota 세율은 0-50%이며 고추·마늘·감귤·양파·분유 등 **대부분의 주요품목은 30-50%**에 분포하고 있는 바, **구간별 관세감축율 적용시 감축율 40-60%** 예상

자. TRQ관리방안

<주요내용>

○ 현 제안서들을 중심으로 원칙(discipline) 개발 필요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G10**과 공조를 통해 국내시장 안정의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TRQ 관리장치는 유지 주장**

○ 수입국영무역, 공매 등 우리의 핵심 TRQ관리방식은 유지 주장

○ 품목특정적 요건 부과 및 최종 용도제한 금지, 쿼터 미소진시 메커니즘, 계절제한 폐지 등은 반대 주장

○ 다만 협상동향을 볼 때, 국내산 구매요건 부과금지, 재수출 부과요건 금지, 쿼터 조기할당 등은 대세 수용입장으로 대응

차. 열대작물

<주요내용>

❑ **열대작물 품목범위는 'UR리스트 + α'가 될 것이나 케언즈 리스트보다는 범위가 작을 것임**

○ 대체작물은 반드시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논의 가능

❑ **대우관련**, fullest liberalization은 열대작물의 관세감축율이 최소한 **최대 관세감축율(선진국 67-73%) 이상이 됨을 의미**

* 의장은 UR기간동안 **열대작물에 대해 상당부분 이미 무세화**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주요국의 열대작물 관세율 변화를 제시함(Attachment 1)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열대작물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UR리스트에 일부 품목이 추가**되는 한편, 케언즈리스트보다는 범위가 적게 될 전망

○ 이와 관련, 우리의 관심품목의 포함여부 및 list의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

❑ 열대작물 대우관련 최상위구간 감축률보다는 더 큰 감축률 적용을 제시한 바, 이는 케언즈 방식(0-25%는 0%관세, 25% 이상은 85% 감축)보다는 유리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품목(UR 리스트) 중 절반이상이 관세율 30%이하로 최상위구간 감축율 적용시 어려움 예상

❑ 이에 G10 및 EU와 공조하여 개별국가의 고려없이 **일률적인 관세감축은 불균형적인 부담이 초래**한다는 원칙으로 대응

○ **list**와 **관련, 비열대국가 생산비중이 큰 품목은 열대작물로** 보기 어려운 바 이의 제외 및 **indicative 방식** 제안 필요

○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EU의 열대작물 대우방식(3단계 접근 방식)** 등 지속적 제기

카. 기타 이슈

<주요내용>

❑ 최빈개도국(LDC)

○ 선진국 또는 자발적 개도국은 **2008년도 또는 이행기간초까지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무쿼터(DFQF)** 제공

○ 어려움이 있는 국가는 동 기간동안 **적어도 97%까지** DFQF를 제공하고, 초기 리스트 제공

❑ 신규가입국(RAM)

○ 사우디아라비아, 마케도니아, 베트남은 의무 면제하고 나머지 신규가입국은 가입공약 이행 1년 후부터 의무 적용

○ 이행기간은 2년 연장 가능

○ 구간별 감축율의 5%p 하향조정, 10%이하 관세는 감축 면제

- SVE 신규가입국은 감축 면제

❑ **소규모취약경제(SVE)**

○ 소규모취약경제의 정의 규정

- '99-'04년간 세계상품무역량 비중 0.16%이하, 비농산물 무역비중 0.1%이하, 농산물 무역비중 0.4%이한 국가(총 44개)

○ 선진국 및 자발적 개도국은 SVE 수출품목에 대한 우대 부여

❑ **1차 상품(Commodity)**

○ 선진국 또는 자발적 개도국은 1차상품 의존개도국이 제시한 품목에 대해, 이행 최종년도에 1차상품 및 가공품간 관세가 X%p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종가세로 전환)

❑ **특혜 잠식**

○ 특정 품목(바나나 등)에 유의하되, 의장문서에서 제시한 방식(장기 이행기간 등) 제안에 유의

❑ **면화**

○ 선진국 및 자발적 개도국은 **이행기간 초년도부터 최빈개도국(LDC) 면화 수출에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보장**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최빈개도국과 관련 홍콩각료회의 합의에 따르면 대상범위가 **전품목의 97%**인바, **동 초안은 이를 넘는 부담**을 가함

○ 이에 우리의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의무 수용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바,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

❑ 기타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으로 논의 동향 주시 차원 대응

2. 국내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주요내용>

❑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은 「최종 AMS 양허수준 + '95~'00년 농업생산액 대비 10%(품목특정 및 불특정 AMS 해당품목 생산액 대비 5%) + 현재 블루박스 지급액 및 농업생산액('95~'00년 기준) 대비 5%중 높은 수치」의 합으로 계산하고 지원규모에 따라 감축

- ○ **600억불 이상** : [75] [85] % 감축
- ○ **100~600억불 미만** : [66] [73] % 감축
- ○ **100억불 이하** : [50] [60] % 감축

❑ **2구간에 속해있는 선진국**(미국, 일본)은 1구간과 2구간 사이 감축률 차이의 ½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감축 노력**하되, **저소득 최근가입국**은 OTDS 감축 면제

❑ 이행첫해 및 전체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기준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행 최종년도까지 **균등 감축**

❑ **감축대상보조(AMS) 한도가 없는 개도국**은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이 면제되고, **감축대상보조 한도가 있는 개도국**은 선진국 무역왜곡보조총액의 ⅔ 감축 및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 부여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OTDS 감축수치**는 당초 해당구간별 감축률을 range로 제시하였으나, **세부원칙 초안에는 2가지 option**으로 타결 가능범위를 좁힘

○ **미국**의 OTDS 감축수치는 제시하지 않는 대신 2구간에 속한 국가의 경우 1, 2구간 감축률 차이의 ½ **추가감축 방안** 제시

구 간	OTDS 감축폭		
	'06.6월	**'07.4 · 5월**	**'07.7월**
1 (EU)	70∼80	좌 동	［75］［85］%
2 (미국, 일본)	53∼75	〃	［66］［73］%
3 (기타)	31∼70	〃	［50］［60］%

❑ **우리나라**의 OTDS 감축한도는 선진국 기준 33,054(60% 감축)∼41,319억원(50% 감축)으로 정해질 전망

○ **선진국 기준 적용시** OTDS 감축한도가 AMS, BB, DM 한도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감축 부담은 없음**

○ 다만, 개도국 기준으로 **OTDS 감축률 60% 적용시 3,616억원 추가감축** 부담 발생

❑ 1, 2구간 감축률 차이(9~12%)와 **2, 3구간의 감축률 차이**(13~16%)를 **차등화**한 바, **3구간의 감축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3구간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속해 있고, 향후 농업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축률 최소화

<참고>

국내보조 시뮬레이션

❑ 분석 조건

○ OTDS, AMS

구 간	OTDS 감 축 폭	AMS 감 축 폭
1 (EU)	〔75〕〔85〕%	〔70〕%
2 (미국, 일본)	〔66〕〔73〕%	〔60〕%
3 (기타)	〔50〕〔60〕%	〔45〕%

○ Blue Box : 기준년도는 '95～'00년(미국 예외)

구 분	1995-2000년 생산액의 2.5%	1999-2001년 생산액의 2.5%
생산액(십억원)	30,782 (쌀 9,050)	33,158 (쌀 10,275)
지원 가능규모(십억원)	769.6	829.0

○ De minimis('95～'00년 기준)

구 분		50% 감축시		60% 감축시		80% 감축시	
선진국 (현행 5%)	품목불특정	2.5%	7,696억원	2%	6,156억원	1%	3,078억원
	품목특정		5,391		4,313		2,156
	합 계		13,087		10,469		5,235
개도국 (현행 10%)	품목불특정	6.7%	20,624	6%	18,469	4.7%	14,468
	품목특정		14,448		12,939		10,135
	합 계		35,072		31,408		24,603

* 농업 총생산액 : ('95～'00) 307,823억원, ('99～'01) 331,585
* 품목특정 총 생산액 : ('95～'00) 215,644억원, ('99～'01) 227,035

❏ 분석 결과(이행연도말 지원가능 규모, 선진국 기준)

○ OTDS : 33,054(60% 감축)~41,319억원(50% 감축)

* 감축기준(82,637억원) : AMS(14,900) + 품목특정 DM(21,564) + 품목불특정 DM(30,782) + Blue Box(15,391)

○ AMS : 8,195억원(45%감축)

○ Blue Box : 7,696억원('95~00년 기준)

○ De minimis : 5,235(80% 감축)~13,087억원(50% 감축)

○ AMS, DM, Blue Box 합계는 21,377~28,978억원으로 OTDS 감축한도 33,054억원 이하이므로 추가감축 부담은 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감축기준	선진국	개도국	비고
OTDS		82,637	41,319	55,119	50% 감축
			33,054	49,582	60% 감축
AMS		14,900	8,195	10,430	45% 감축
DM	특정	21,564	5,391	14,448	50% 감축
	불특정	30,782	7,696	20,624	
BB		15,391	7,696	7,696	'95~'00년(a)
			8,290	8,290	'99~'01년(b)
보조 합계		36,464	28,978	53,198	BB (a) 적용
			21,377	43,362	BB (b) 적용
추가 감축			12,341	1,921	OTDS 50%
			4,076	-3,616	OTDS 60%

나. 감축대상보조(AMS)

<주요내용>

❑ 최종 양허된 **감축대상보조**는 지원규모에 따라 감축

- **400억불 이상** : 〔70〕% 감축
- **150～400억불 미만** : 〔60〕% 감축
- **150억불 이하** : 〔45〕% 감축

❑ 최종 양허된 **감축대상보조 규모가 큰**(농업생산액 대비 40% 이상) **선진국**은 추가감축 노력을 해야 하며, **2구간에 속한 국가**(미국, 일본)는 1구간과 2구간 감축률 차이만큼 추가 감축하고, **3구간에 속한 국가**는 1구간과 2구간 감축률 차이의 ½만큼 추가 감축

❑ 저소득 **최근가입국**은 감축대상보조 축소가 면제되며, **투자보조, 투입재보조,** 금융비용 축소를 위한 **이차보전**, **채무상환지원**은 감축대상보조에서 제외

❑ **감축대상보조**는 매년 **균등감축**하되, **개도국**은 선진국의 ⅔ 감축하고,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 부여

- **개도국**의 농업에 대한 **투자보조금**과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농 투입재보조금(AoA Article 6.2)**은 현행대로 유지

❑ 국내보조 약속을 준수함에 있어 **과도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영향을 고려(AoA Article 18.4) 하는 것은 사안별(case-by-case)로 다루어질 것임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AMS** 감축수치는 1, 2구간은 변동이 없으나 3구간은 당초 37～60%에서 45%로 제시

○ 1, 2구간 감축률 차이(10%p)와 2, 3구간의 감축률 차이(15%p)를 5%p 차등화

구 간	AMS 감축폭		
	'06.6월	**'07.4 · 5월**	**'07.7월**
1 (EU)	70～83	70	〔70〕%
2 (미국, 일본)	60～70	60	〔60〕%
3 (기타)	37～60	37～60	〔45〕%

❑ 우리나라 AMS 감축한도는 선진국 기준 8,195억원(45% 감축) 전망

○ '05년부터 양정제도 개편(쌀 수매제 폐지 및 공공비축제 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에 따라 **AMS 한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생산액(A, 억원)	275,123	296,066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쌀 생산액(B)	67,598	86,132	91,928	91,826	100,451	105,046	107,217	95,564	88,359	99,631
B/A(%)	24.57	29.09	30.25	29.75	30.28	31.70	31.94	28.57	26.76	26.72
AMS 총한도(C)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AMS 지원액(D)	20,160	19,098	18,843	15,097	15,031	16,472	15,829	15,041	14,255	13,708
D/C(%)	92.37	90.70	92.88	77.35	80.17	91.62	91.98	91.50	90.97	92.00

○ 다만, **변동형 직불제(AMS), FTA지원대책(**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 등**)** 등을 감안하여 대응할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금(변동형) 지원규모 : '06년) 9,007억원, '07년) 4,371억원

❑ OTDS와 동일하게 우리나라가 속한 **3**구간의 감축률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다. 품목특정 감축대상보조 상한(Product-specific AMS CAP)

<주요내용>

❑ 품목특정 **AMS 상한은 UR**이행기간**('95~'00년) 동안 지원된 평균**으로 하되 국별 이행계획서에 명기하고, 이행기간동안 균등하게 유지

○ 미국의 품목특정 AMS 상한은 UR이행기간('95~'00년) 동안 지원된 총 AMS에 〔'95 ~'04년〕의 품목특정 지원비율을 적용

○ **기준기간 이후 품목특정 AMS를 지원한 국가는** 기준기간 이후 통보된 최근 2개년을 기준기간으로 활용

○ 기준기간 동안 **품목특정 AMS가 de minimis보다 적은 경우** 〔current〕〔new〕 de minimis 이하로 지원

❑ **개도국**의 경우 품목별 AMS 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① '95~'00년 또는 '95~'04년 기준기간동안 평균 지급수준

② 품목특정 de minimis 수준의 두배

③ 매년 총 AMS의 20%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품목특정 AMS 상한 **기준기간**은 **'95~'00년을 대세로** 수용하되, **미국**의 품목특정 AMS상한에 **신축성**을 일부 부여

○ 미국은 '95~'04년 지원비율 적용시 '95~'00년과 '99~'01년 기준기간의 중간 수준으로 품목특정 AMS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UR 이행기간 동안('95~'04년) **AMS 지원대상은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5개 품목이 해당

○ **쌀**은 과거 지급실적이 많았으며 최근 쌀 수매제 개편,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을 감안하면 AMS 상한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적을 전망

* 쌀 품목별 AMS 지급상한 : '95~'00년 기준 17,450억원, '95~'04년 기준 163,534억원, '99~'01년 기준 15,777억원

○ **옥수수, 보리**는 과거 지급실적은 많았으나, 최근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유채**는 지원실적이 미미(10억원 내외)하여 영향은 적을 전망

* '95, '04년 지급실적 : 옥수수 60억원 → 13, 보리 516억원 → 396

○ 다만, **콩**은 '03년까지 De minimis로 산입되었으나 '04년부터 AMS로 산입('04년 생산액 대비 10.96%)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수매량 증가로 지원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의장제안 적용시 최근 2개년 평균지원 실적('04년 지급실적 473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전망

(단위 : 억원)

기준 연도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95~'00년 지원액	17,450	476	62	50	11
'95~'04년 지원액	16,353	464	137	37	10

❑ 품목특정 **AMS 상한설정**과 관련, **미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논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선에서 대응

라.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주요내용>

❑ **최소허용보조**는 최소 〔50〕〔60〕%를 감축하되,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률에 따른 감축비율과 비교하여 더 큰 감축치를 적용

❑ 저소득 **최근가입국**은 최소허용보조 감축을 면제하고, **신규 최소허용보조는** 〔이행기간 초기부터 적용〕〔이행기간동안 균등 감축〕

❑ **AMS가 없거나,** AMS 대부분을 **생계농, 자원빈약농에게 지원하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 감축 면제

- **AMS 한도가 있는 개도국**의 최소허용보조는 선진국의 ⅔ 감축하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률에 따른 감축비율만큼 추가감축 노력
- **AMS 한도가 있는 최근가입국**(developing country RAMs)은 5% 추가허용하고, 모든 개도국에 대해 신규 최소허용보조는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을 부여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de minimis**는 선진국 기준 적용시 10,469(60%감축) ~13,087(50%감축)억원으로 전망

구 분		50% 감축시		60% 감축시	
선진국 (현행 5%)	품목불특정	2.5%	7,696억원	2%	6,156억원
	품목특정		5,391		4,313
	합 계		13,087		10,469
개도국 (현행 10%)	품목불특정	6.7%	20,624	6%	18,469
	품목특정		14,448		12,939
	합 계		35,072		31,408

❑ '95~'04년까지 **De minimis** 지급실적은 **2,822~7,836**억원으로 선진국 기준 적용시에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품목특정 **De minimis**는 334~2,870억원으로 품목별 생산액 대비 **최대 3% 수준**

- 품목특정 De minimis의 경우 '05년 품목별 소득보전직불제(재원 : FTA기금) 도입이후 지급실적이 없으나 가격변동에 따라 지급가능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시설포도, 참다래)의 '99~'03년 평균가격×80%

* 지원단가 = (기준가격 - 당해연도 평균가격) × 0.8

○ 품목불특정 **De minimis**는 2,488~5,255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 대비 **최대 1.7% 수준**

○ 다만, 현재 논의 동향 감안시 De minimis는 **최대 80% 수준**에서도 정해질 가능성

(단위 : 억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de minimis 합계(A+B)	**2,822**	**3,437**	**6,553**	**7,836**	**4,865**	**5,244**	**5,458**	**7,884**	**6,444**	**5,388**
de-minimis 품목특정(A)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870	2,300	1,016
de-minimis 품목불특정(B)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144	4,372

❑ 최근 FTA 국내대책 등 정부지원 확대로 **De minimis 활용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De minimis 지급실적 감안시 감축률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대응

○ 주도적으로 이의제기할 필요성은 없으며 **low key**로 대응

마. 블루박스(Blue Box)

<주요내용>

❑ **현행 블루박스 조항**(AoA Article 6.5)에 생산제한 요건이 없는 새로운 기준(**new blue box**)을 도입

Article 6.5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은 현행 총 AMS 계산에서 면제된다.

(a)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로 다음요건을 충족

(ⅰ)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경지 및 생산량에 기초하거나,

(ⅱ)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 이하이거나,

(ⅲ)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는

(a) (생산제한 없이)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로 다음요건을 충족

(ⅰ)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경지 및 생산량에 기초하거나,

(ⅱ)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고,(and)

(ⅲ) 이러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기준의 85%이하에 대해 이루어진다.

❑ **블루박스 상한**은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미만이며, 이행첫해부터 적용**되며, 국별 이행계획서에 명기

○ 예외적으로 기준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총액의 40% 이상을 블루박스로 지원**하는 국가는 감축대상보조 총액의 감축비율을 적용하여 감축하고, 즉각적인 상한적용이 곤란한 경우 짧은 이행기간 고려 가능

❑ **블루박스 품목별 상한**은 '95~'00년 평균 지원실적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농업생산액의 2.5%가 전체 블루박스 상한에 적용되듯이 품목특정 지원비율의 〔110〕〔120〕%를 초과해서는 안됨

○ 특정품목에 대해 한도를 초과하는 블루박스 지원증가는 해당 품목에 대한 현행 AMS 지원 감축 상당치(1:1 교환비율)를 초과해서는 안됨(역관계불가, 면화는 2:1)

○ 특정품목에 대해 기준기간동안 AMS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블루박스 지원증가는 전체 블루박스 상한 및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10%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됨

❑ **개도국의 블루박스 상한**은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 대비 **5%**를 초과해서는 안됨

○ 다만,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 이상을 지원한 특정품목의 경우 개도국은 블루박스 전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 가능(1:1, 역관계불가)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 **Blue Box 한도**는 '95~'00년을 기준기간으로 7,696억원 전망

❑ **newcomer 이슈**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개도국 우대조항으로 반영**

❑ '06년까지 우리나라 Blue Box 사용실적은 없으나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형)를 **new blue box**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 연도별 예산 : '06) 9,007억원 → '07) 4,371 → '08) 7,388 → '09) 7,456 → '10) 8,351 → '11) 9,214

바. 허용보조(Green Box)

<주요내용>

❑ **허용보조 요건(AoA Annex2)** 중 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비연계소득보조, 자연재해 구호지원,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① **일반서비스(para2, 신설)** : 개도국의 농업인 정착, 농지개혁 프로그램, 농촌개발, 생계안보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 하부구조 서비스, 귀농, 토양보전 및 자원보전, 한발 및 수해조절, 농촌고용 프로그램, 영양안보, 자산배분 및 정착프로그램, 농촌개발 및 빈곤구제증진 등

②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para3 footnote5, 수정)** :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정부비축계획으로 구입가격과 외부참조가격과의 차액은 최소허용보조에 포함될 수 있음(현행 AMS 산입)

③ **비연계소득보조(para6, 수정)** : 고정불변의 기준기간은 농업위원회에 통보하고, 기준기간의 예외적인 변경은 배제되지는 않지만 ⅰ)변경된 기준기간이 과거 상당수의 연도이거나, ⅱ)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중립적이거나 지원을 감축하는 경우에 한해 수정가능. 이런 유형의 지원사례가 없고 통보되지 않았던 개도국은 적정한 기준기간* 설정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고정불변이며, 통보되야함

* 개도국의 한시적 또는 시범사업은 고정불변기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연재해구호지원(para8, 수정)** : 개도국의 자연재해구호지원 및 작물 또는 생산보험, 동식물 질병방제 및 예방목적의 구제에 대한 정부지원은 30%이하 손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

⑤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para11, 수정)** : 기준기간은 고정불변이며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예외적인 기준기간 수정은 배제되지는 않지만 비연계소득보조와 동일기준 적용

⑥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para13, 수정)** : 개도국은 조건불리 지역이 당해지역(contiguous geographical area)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예외로 하며, 기준기간은 비연계소득보조와 동일기준 적용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허용보조는 요건을 강화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개도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기준기간 변경에 대한 예외,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

① **일반서비스** : 개도국 우대 관련조항으로 수용가능

②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 para3 footnote5는 개도국이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시 관리가격에 의한 경우도 허용보조로 인정은 하되 시장가격지지 효과는 AMS에 산입하자는 취지임. 수정 내용은 AMS가 아닌 de minimis에 산입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우리나라 공공비축제도는 시가매입, 시가방출이 원칙이므로 영향은 없고 수용가능(다만, 감축대상지지를 허용보조로 우회하여 지불할 가능성)

③ **비연계소득보조** : 개도국은 시범사업 등을 감안 기준기간을 변동 가능하게 한 것으로 수용가능

④ **기타** : 개도국 우대조항으로 수용가능

마. 면화(Cotton)

<주요내용>

❑ 면화에 대한 감축대상보조는 다음 공식대로 감축함

○ $$Rc = Rg + \frac{(100 - Rg)*100}{3*Rg}$$

* Rc = Specific reduction applicable to cotton as a percentage
* Rg = General reduction in AMS as a percentage

○ 상기 공식은 ’95~’00년 기준으로 면화에 대해 각국이 통보한 지원규모(DS4)의 산술평균으로 계산됨

○ 면화에 대한 블루박스 상한은 품목특정 상한의 ⅓

❑ 면화에 대한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이행기간**은 일반이행기간의 ⅓

❑ 개도국의 면화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및 블루박스 한도는** 선진국의 ⅔를 적용하고, 선진국보다 긴 이행기간 부여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면화 지원에 대한 **높은 감축률, 낮은 품목상한 설정** 등 **Cotton-4*** **제안**을 대체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

※ Benin, Burkina Faso, Chad, Mali

3. 수출경쟁

가. 수출보조 철폐

<주요내용>

○ 수출보조를 2013년까지 철폐하기 위해 2010년까지 50%를 철폐하고, 2013년까지 나머지 50% 철폐

○ 물량기준으로는 연례 동등감축 또는 standstill 방식으로 감축

○ 홍콩각료회의에 따라 개도국은 수출보조가 끝난 후 5년 동안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수출물량에 대한 국내 운송비를 지원가능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동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어 예의주시하는 선에서 대응

나. 수출신용, 신출신용보증 및 보험

<주요내용>

○ 최대상환기간 180일 인정(단, 종자[12개월], 가축[24개월] 등 예외인정

○ 자생기간(self-financing)기간을 [4] 또는 [5]년으로 제시

※ self-financing 기간은 수출신용기관이 정부지원 없이 보험 premium 만으로 관리비용과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기간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동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어 예의주시하는 선에서 대응

다. 식량원조

<주요내용>

○ 모든 식량원조는 【필요성에 근거, 무상원조, 농산물 또는 다른 재화・서비스의 상업적 수출과 관련금지, 공여국의 시장 개척 목적금지, 상업적 목적의 재수출금지】충족해야 함

○ 긴급상황에서의 식량원조(Safe Box)

- 긴급상황 선포의 주체는 해당국 정부 또는 UN 사무총장
- 긴급상황에 대한 발동주체는 개별국가, 관련 UN기구, NGO

○ 비긴급상황에서의 현물지원은 【 인정된 기관에 의한 필요성 평가(need assessment), 사전에 확인된 수혜대상 한정, 개발 또는 영양상의 목적을 위해서 제공】충족해야 함

- 현금화(monetisation)는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식량원조의 이행, 농업투입재의 구입의 경우에는 허용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장기저리 차관방식의 대북지원형태를 고려할 경우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내부거래로 주장해 왔으며, 북한 문제는 WTO와는 별도 차원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low key로 대응

라. 수출국영무역 (Export State Trading Enterprises)

<주요내용>

- 국영무역기관의 정의는 현행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름
-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독점권은 수출보조금과 같이 2013년 철폐

<검토의견 및 대응방향>

- 동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없어 예의 주시하는 선에서 대응

〔 붙임2 〕

그간 의장 제안서 주요내용 비교

	쟁 점	'06.6월 모델러티 초안	'07.4 · 5월 의장문서	'07.7월 모델러티 초안
시장접근	관세감축	선진국: 구간경계 / 감축율 0~20/30 / 20~65 20/30~40/60 / 30~75 40/60~60/90 / 35~85 60/90%이상 / 42~90 개도국: 구간경계 / 감축율 0~20/50 / 15~65 20/50~40/100 / 20~75 40/100~60/150 / 25~85 60/150%이상 / 30~90	구간경계 : 20/50/75(G20제안) 최상위구간 감축률 : 미국제안(85%)과 EU 제안(60%) 사이 *최상위구간 세 번수 25~30%이상시 조정가능 평균 관세감축률 : 50%이상	선진국 관세감축(구간경계 20/50/75) 구간 경계 / 감축율 75% 초과 / 66-73 50% ~ 75% / 62-65 20% ~ 50% / 55-60 20%이하 / 48-52 개도국 구간경계 30/80/130, 감축율 선진국 2/3
	관세상한	선진국 75 또는 100%, 개도국 150 또는 X%	별도 대안 미제시	직접 언급 없음
	민감품목	범위 : 선진국 1~15%, 개도국 선진국대비 〔1.5배〕 대우 : TRQ증량기준(양허수준, 수입량, 소비량) 향후 논의	범위 : 전체 세번의 1~5% 대우 : 수입비중에 따라 TRQ증량 조정	범위 : 전체 세번의 4% 또는 6%(개도국은 1/3 추가) 대우 : TRQ증량은 국내소비량의 3~6%
	특별품목	범위:5개 세번 또는 20% / 대우: 〔관세상한 · TRQ면제〕, ½ 감축면제 · ¼ 5%감축 · ¼ 10%감축	범위 : 전체 세번의 5~8% 대우 : 최소 10~20% 감축, 검증가능한 지표 활용	범위 : 민감품목보다 크나 추후 집중논의 대우 : 좌동
	SSM	대상품목 및 구제조치는 향후 협상과제	현행 SSG보다 신축적이되 품목은 제한적	국내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추후 집중 논의
	SSG	철폐 또는 축소	대상품목 대폭 감축	이행기간말 철폐 또는 민감품목 수만큼 유지
국내보조	OTDS AMS	대상 국가 / OTDS / AMS EU / 70~80% / 70~83% 미국 · 일본 / 53~75% / 60~70% 그외 국가 / 31~70% / 37~60% -OTDS는 이행첫해 20% down-payment -품목별AMS 상한설정('95~'00년 또는 '99~'01년)	대상 국가 / OTDS / AMS EU / 70~80% / 70% 미국 · 일본 / 53~75% / 60% 그외 국가 / 31~70% / 37~60% -품목특정AMS 상한은 미국에 신축성 부여방안 제시 -품목집중 방지를 위한 규율강화(joint CAP)	대상 국가 / OTDS / AMS EU / 〔75〕 〔85〕 % / 〔70〕 % 미국 · 일본 / 〔66〕 〔73〕 % / 〔60〕 % 그외 국가 / 〔50〕 〔60〕 % / 〔45〕 % -품목특정AMS 상한은 '95~'00년기준
	Blue Box	농업생산액 5%에서 2.5%로 감축, 품목별 상한설정	상한은 2.5%로 감축	상한은 2.5%로 감축, 품목집중 지원방지
	De minimis	50~80% 감축, 이행첫해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최소 50% 감축	최소 50% 또는 60% 감축, 이행첫해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Green Box	현행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요건 변경여부와 개도국 우대조항 신설내용은 향후 협상과제	일반서비스, 공공비축, 직접지불, 재해지원 등 일부내용 수정 필요성 제기	일반서비스, 공공비축, 직접지불, 재해지원 등 일부내용 수정, 개도국 우대조치 반영
수출경쟁	식량원조 등	식량원조는 완전무상 제한 여부, 긴급상황 정의, 비긴급상황시 현물원조 허용여부 등 향후 논의	무상원조원칙, 긴급상황 정의 등 제시, 비긴급상황시 현물지원 엄격규율 등	무상원조원칙, 긴급상황 정의 등 제시, 비긴급상황시 현물지원 엄격규율 등

〔 붙임3 〕

특별품목 선정지표

No.	지표 내용	필요Data	자료출처
1 (2)	법, 규정, 행정지침에 따라 기본 식품군의 일부로 지정되거나, 주식으로 지정된 것	규정	양곡관리법
	영양가 또는 1인 1일당 열량공급도가 높은 품목	1인 1일당 열량공급량	FAO, 식품수급표
2	자급도가 높은 품목	자급률(생산/소비)	FAO, 식품수급표
3 (2)	국내소비가 전세계 수출량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품목	전세계 수출량 대비 소비비중	FAO, 식품수급표
	전세계 수출시장에 있어 최대 수출국의 비중이 큰 품목	최대 수출국 수출비중	FAO
4 (2)	소규모 농가(20ha 이하이거나 평균 농가규모 이하)가 생산하는 비중이 큰 품목	경지규모별 생산량	
	소규모 농가(20ha 이하이거나 평균 농가 규모 이하)의 비중이 큰 품목	경지규모별 농가수	농업총조사
5	고용비중이 큰 품목	생산농가비중	농업총조사
6 (6)	저소득 농가, 자원부족 농가, 자급농, 취약농가, 여성농가비중이 큰 품목	저소득농, 자원부족농, 자급농, 취약농, 여성농가비중	
	조건불리지역 생산비중이 큰 품목	조건불리지역 생산비중	
7 (2)	농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생산액비중	농림통계연보
	농가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가구당 소득비중	농산물생산비통계
8 (2)	가공 비율이 낮은 농산물	가공율	
	농외경제활동과의 연계를 통하여 농촌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가내수공업 등 연계율	
9	관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관세수입	관세청
10 (2)	가구당 식품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식품비대비 지출비중	가계조사 (일부품목가능)
	가구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소득대비 지출비중	가계조사 (일부품목가능)
11	다른 회원국이 품목특정 무역왜곡보조 또는 수출보조를 지급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품목	회원국들의 보조 및 수출현황	WTO자료
12 (2)	국제평균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품목	노동생산성	농업총조사 (단, 국제자료 없음)
	국제평균대비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품목	단위당 생산성	FAO, 국립품질관리원

* ()괄호안 수치는 indicator 내 세부지표 숫자임

〔 붙임4 〕

DDA 협상 경과

❑ '01년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목표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 3) ② 이행계획서 제출 ('03. 9, Cancun 각료회의) ③ 협상완료('04말)

❑ '03.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 8. 1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05.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모멘텀 유지**

❑ '06.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

❑ **'06.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으며,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

❑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은 다자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두 차례 **의장 문서**를 제시('07.4월, 5월)

❑ '07.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

❑ '07.7월 농업협상그룹 Falconer 의장 **세부원칙 초안 배포**

- 향후 이를 논의의 중심으로 활용, **9월중 집중적인 다자협의**를 거쳐 연내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할 전망

〔 붙임5 〕

UR · DDA 협상 추진경과 비교

구 분	**UR 협상**	**DDA 협상**
협상출범	**1986.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2001.11월** (카타르 도하)
합의추진 과 정	1988.12월 (몬트리올각료회의 결렬) 1990.6월 (1차 초안제시) **1990.12월** **(브랏셀각료회의 결렬)** ※브랏셀각료회의 결렬 이후 던켈총장에게 협상진전을 위한 막후 절충 권한 부여 **1991.12월** (던켈총장 초안제시)	2002.3월 (하빈슨의장 초안 제시) 2003.9월 (칸쿤각료회의 결렬) 2004.8월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 **2005.12월** **(홍콩각료회의 : 시한연장)** ※홍콩각료회의 시한내 타결 실패 이후 라미총장에게 협상 진전 역할 부여 **2006.7월** (라미총장 협상 일시중단 선언)
미 · **EU** 합의 (블레어하우스합의*)	1992.11월	-
미 행정부 **TPA** 연장	**1993.1월**	- **(2007.7.1. 미 TPA 만료)**
이행계획서 최종제출	1994.3월	-
협상종결	1994.4월 (마라케쉬 각료회의)	-

주) 블레어하우스 합의란 미국과 EU가 백악관 블레어하우스에 모여 농업 국내보조 합의를 도출한 것(블루박스 보조 등 합의)으로 UR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

[붙임6]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구분	대상 국가	기본입장	비 고
G6	미국, EC, 브라질, 인도(이상 G4국가), 일본, 호주		농업협상 주요국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관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우루과이, 짐바브웨	- 개도국 입장 대변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 개도국 입장 반영 ·특별품목(SP) 및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frican, Carribean and Pacific Group(ACP), Least Developed Countries(LDCs), Africa Union(AU) 국가들로 구성(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 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9개국가	-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유지 주장	

〔 붙임7 〕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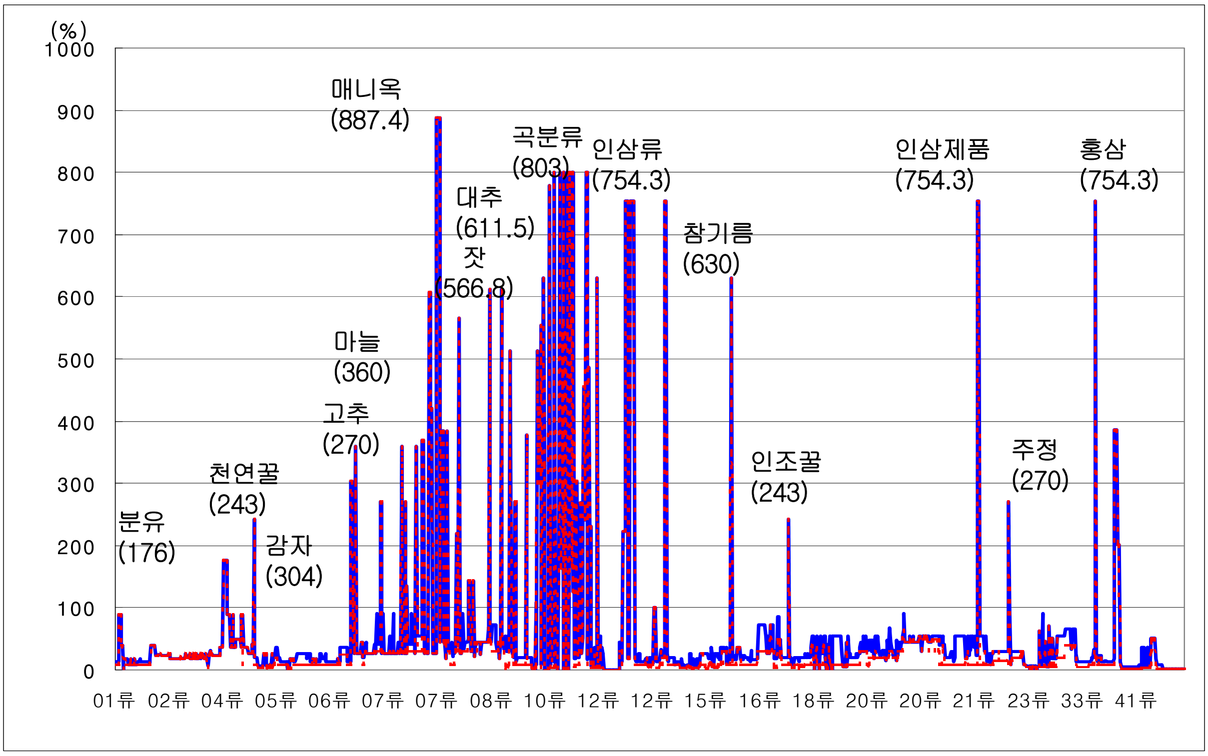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78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쥬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꿀, 과당, 포도당, 과수묘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 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